

제2020-1호 2020년 1월 2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경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0-1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2호 도로 지정 공고[화장동-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진축*] 4
- 여수시 공고 제2020-3호 2020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5
- 여수시 공고 제2020-6호 2020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15
- 여수시 공고 제2020-9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극세청폐업) 처분 공고 28
- 여수시 공고 제2020-1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29
- 여수시 쌍봉동 공고 제2020-1호 쌍봉동 33통 통장 모집 공고 30
- 여수시 공고 제2019-3136호 도로지정공고(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87-4번지 외 1) 33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730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4
- 여수시 규칙 제731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7
- 여수시 규칙 제732호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9
- 여수시 훈령 제370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83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장동 252-1번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화장동 252-1	7.7	7	70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화장동 252-14	50	7	361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2.

여 수 시 장

2020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여 수 시 장

1. 융자금규모 : 150억원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창업 제외)
- 사업자 및 종업원이 융자금상환 시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종업원 변경 시 변경자 적용(변경자 발생 시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 환수 대상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보전 포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장을 휴 · 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소상공인이면서 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별표)

3. 지원내용

- 용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용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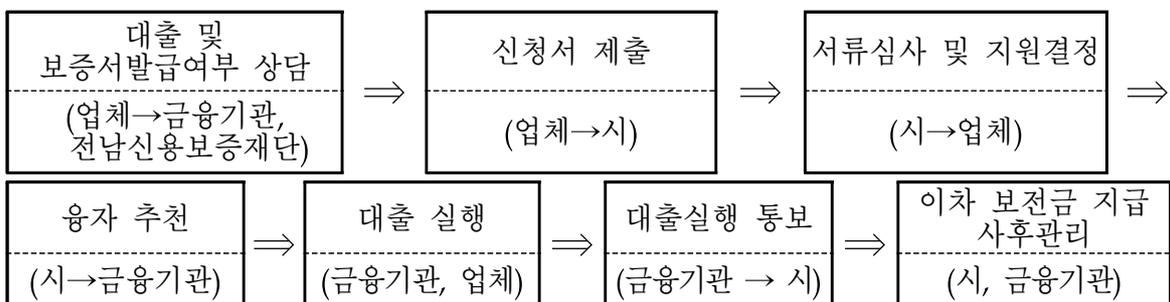
4. 용자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2020.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659-3617,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 구비서류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용자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3) 각 1부 ⇒ 소정양식(여수시 홈페이지 다운) 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중 택 1) ⇒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 발급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④ 사업자 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⑤ 주민등록 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⑥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선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 근로복지공단 발급

※ 기 지원 업체는 상환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신청절차



5. 지원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 용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6. 대출취급 기한

- 용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신청 가능함

7. 대출취급 기관

- 대출취급 은행 : 9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 붙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8. 기타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0년 여수시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자금용자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산업경제 ➡ 기업정보/지원정책 ➡ 자금지원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061-659-3617)으로 문의 바람

【 별표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제4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 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	도박 관련 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서식 1]

소상공인 지원자금 용자신청서

1. 업 체 명			
2. 소 재 지 (도로명주소)	핸 드 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3. 사 업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4. 신 청 금 액	백만원		
5.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복지원 여부			
6. 대출희망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협의회() 신용협동조합()		
7. 자 금 용 도	<input type="checkbox"/> 경영개선자금(운전자금, 물품 구입비 등) <input type="checkbox"/> 시설개선 자금(기계·설비 설치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7. 업 체 현 황

매 출 실 태	업 종		주요판매품목	
	연간 매출액	백만원	수 출 액	백만원(\$ 천달러)
종 업 원	명(상시근로자 명, 시간제 명)			
재 무 상 태	총자산	백만원	자가 자본	백만원
	부 채		부 채	백만원
상 권 유 형	<input type="checkbox"/> 도심 <input type="checkbox"/> 부도심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근린 <input type="checkbox"/> 주거			
입 지 특 성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복합 <input type="checkbox"/> 전문 <input type="checkbox"/> 레저 <input type="checkbox"/> 공업지역 <input type="checkbox"/> 개발지역 <input type="checkbox"/> 재래시장			
기 타 사 항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증명원(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中 택 1), 사업장가입자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물 량	소 요 액	비 고
계			

4. 자금조달 방법

- 자기자본 : 백만원
- 용 자 : 백만원
- 기 타 : 백만원

5. 융자금 상환계획

6. 기 타(사업의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등)

[서식 5]

여수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출실행 통지서

1. 추천업체

추천업체	기업체명		대표자	
추천내용	자금명 및 추천회차			
	추천일자			
	추천금액			
	비 고			

2. 대출 실행내용

자 금 용 도	
대 출 일	
대 출 금 액	
적 용 금 리	% (이차보전 후 업체 적용금리)
대 출 기 간	
담 보 내 용	부동산, 보증서(신보, 기보, 재단), 신용, 기타()

이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통지함.

2020년 월 일

은행명 (인)

여수시장 귀하

※ 대출 실행일에 FAX 전송한 후 전화 연락바랍니다.

우)59703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 전화 061-659-3617, FAX 061-659-5816

2020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여수시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여 수 시 장

1. 용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가. 지원대상

여수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아래 해당되는 사업체로서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

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공장 미등록 업체 : 소기업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함.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③ 지역특산화상품 생산업체

- 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 원·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④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별표 1, 2]

⑥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별표 3]

《 지원 제외대상 》

- 기 용자업체의 경우 상환 종료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기업 제외)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동일정책 자금으로 중복지원 받은 업체
(단, 타 정책자금과 신청 자금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 소유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다업종 경우 해당업종 매출액(2년 평균) 비중이 30%미만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업체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나. 지원대상 사업

- ①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동화, 정보화, 사업전환사업 등) 사업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소요자금
- 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일반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 및 재난피해 복구 직접비용 등
-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 신제품, 신기술,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장비 설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내용

- 용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매출액기준 50% 범위내)
단,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청금액 전액(2억원 이내) 용자 추천
- 용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2.0%(2년간)
 -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스타기업,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은 연 2.5% 지원

*** 일자리 창출기업 대상기준**

‘19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증가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기업의 담보력,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름)

4. 용자신청 및 접수

- 용자신청 : 연중(201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여수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 연락처 : ☎ (061)659-3616, FAX (061)659-5816
-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지역경제과 우편번호 59675
- 구비서류

필수 서류	① 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정보이용동의서 1부 【별표 4】 ②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가능 ③ 사업장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기업)
공무원 확인	① 공장등록증 사본 1부(미등록 공장의 경우 건축물대장 확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선택 서류 <i>(해당 기업)</i>	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청 신청발급) 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⑦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기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별표 5】 ⑧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 1부 ⑨ 투자,실시협약 및 개별법 승인, 인.허가 증빙서류 1부(관광숙박업 등 해당업체) ⑩ 스타기업 및 지역전남형 강소기업 인증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5. 지원업체 선정

- 신청기업별 용자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과 당해기업 신용상태, 자산, 경영실태 등을 참작 선정

6. 대출취급 기한

- 용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단,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내 사전에 변경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7. 대출취급 기관

- 대출취급 기관 : 10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 농협, 산업, 기업, 우리, 국민, 하나, 신한, 새마을금고협의회, 신용협동조합
- 대출 구비서류,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은 대출취급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 ①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 시행규칙,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 ③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④ 자금대출 승인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변경신청서를 작성 지체없이 시에 통보하여야 함. **【별표 6】**
- ⑤ 자금용자 신청서는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 산업경제 ➡ 기업정보/ 지원정책 ➡ 자금지원

[별표 1]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 종 명	비 고
<u>계</u>	<u>16개 업종</u>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1	항공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1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320	전문디자인업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95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9512	통신장비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별표 2]

제조업 관련 지식산업서비스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 종 명	비 고
계	14개 업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61210	유선 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	광고 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1 매니저업 제외)	
74100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 관광숙박업의 경우 신규사업자 지원 가능함
 - ☞ 신규사업자는 해당부서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함
 - ※ 관광숙박업의 범위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 기타 업종 중 투자·실시협약기업
- 여수시 스타기업,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별표 4]

중소기업발전자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2.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3.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4. 신 청 금 액	백만원	타 정책자금 사용여부	
5. 대출희망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여수() KEB하나중앙() 신한은행() 새마을금고협의회() SC제일은행() 신용협동조합()		
6. 자 금 용 도	구조고도화 사업자금 <input type="checkbox"/> 경영안정자금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발 사업자금 <input type="checkbox"/>		

7. 업 체 현 황

입 지 조 건	국가산단 <input type="checkbox"/> 지방산단 <input type="checkbox"/> 농공단지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업 체 구 분	일반기업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창출기업 <input type="checkbox"/> 강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스타기업 <input type="checkbox"/>		
생 산 실 태	업 종		주요생산품목
	생 산 액	백만원	수 출 액
종 업 원	명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성별 (남: 여:)		
재 무 상 태	총자산		자가 자본
		백만원	부 채
특 기 사 항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뒷면>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보이용동의서 1부 3. 2년간 재무제표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물 량	소 요 액	비 고
계			

4. 자금조달 방법

○ 자기자본 : 백만원

○ 용 자 : 백만원

○ 기 타 : 백만원

5. 융자금 상환계획

6. 기 타(사업의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등)

전문건설업 등록말소(국세청폐업)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폐업 사실이 확인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여 수 시 장

1. 등록말소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해당업종 (등록번호)	국세청 확인 폐업일자	처분근거	처분일시 (등록말소)
여수가스 최*환	여수시 봉강서2길 11-1(봉강동)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함평96-27-2-1)	2019.11.2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2020. 1.2. 등록말소

2. 공고 기간: 2020. 1. 2. ~ 4. 16.(15일간)

3. 공고 장소: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 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5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여 수 시 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징금)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주식회사 지에이피그룹 (황 * 섭)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여수2011-07-02)	영업정지2개월 (2020. 1. 03~ 2020. 3. 02)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 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 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82조제1항 제5호

2. 공고 기간: 2020. 1. 2. ~ 2020. 1. 16.(15일간)

3. 공고 장소: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 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처분(영업정지)기간 내에 실태조사 자료를 여수시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등록말소 처분이 됩니다.

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급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수시 쌍봉동 제 2020 - 1호

통 장 모 집 공 고

쌍봉동 통장 임기만료에 따라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관할 통장을 모집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통장 : 33통장(관할구역 : 심곡마을)
2. 공고기간 : '20. 01. 02. ~ '20. 01. 15. 【13일간】
3. 접수기간 : '20. 01. 02. ~ '20. 01. 15. 【13일간】
4. 접수장소 : 쌍봉동주민센터
5.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과 열의가 있는 주민
6. 신청 제외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선출방법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심사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동장 직권임명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임기준안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동장이 최종선임
8. 제출서류
 - 통장후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추천서 1부(해당 통 거주 주민 20명이상 추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경력에 따라 별도 추가 가점배정)
 - ▶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 경력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동주민센터 (☎659-1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02.

쌍 봉 동 장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쌍봉동 ()통장						
사 진 (3×4cm)	성 명	한글 (한자)		생년 월일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현재(년)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여수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쌍봉동장 귀하

-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77번지 외 5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637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돌산읍 평사리	1287-4	100	6	546		
	산246-1	9	6	91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2.

여 수 시 장

제18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 월 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인 

여수시 규칙 제730호

붙임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 중 “기획예산과장·지역경제과장·산단지원과장·투자박람회과장·인구일자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지역경제과장·산업지원과장·투자박람회과장·인구일자리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4호 중 “(100kw미만)”을 “(1,000kw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 중 “및 검사 연기 관리”를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0호 중 “유지관리”를 “시설물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5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2. 전통시장 인정·취소, 상인회·시장관리자 등록·취소

제16조의 제목 “(산단지원과)”를 “(산업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단지원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11호) 중 “설립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동쟁의행위 동향관리

13. 미래대응전략 수립 및 총괄

14. 미래전략과제 발굴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15. 미래대응 관련 행사 추진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

16.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 및 지원

17.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

18.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전파

19.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지원

20. 중앙 부처별 R&D사업 추진

21. R&D전략 및 계획수립 등 연구개발 종합기획 조정

2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23. 지역특화사업 사무에 관한 사항
24.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
25. 산·학·연 기술 공동개발 관리 지원
26. 생물산업 및 기술혁신산업 지원 운영
27. 지식기반 및 신소재산업 육성 지원
28.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실증기반 조성사업
29. 여수과학관 건립 사업
30. 고감성 고분자소재 산업화 사업 추진
31.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지원
32.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CO2 전환·활용 기술센터)
33. 산단 인·허가 등 민원 원스톱 처리 지원

제17조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제24조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이순신도서관 운영 및 관리업무
16. 도서관 건립 및 확충계획
17. 도서관 기계·소방시설 관리

제25조 중 “기후환경과장” 을 “기후생태과장” 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및 제3호 중 “사회복지서비스” 를 각각 “지역사회보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 중 “자활후견기관” 을 “지역자활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2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8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제27호부터 제37호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호 중 “기초노령연금” 을 “기초연금”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노인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6. 노인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감독
17. 노인단체 지원관리
18. 홀로사는 노인 안전시스템 구축
19. 어르신 공동생활보금자리 운영
20. 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운영
21.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22. 노인 사회적 보호 체계 및 인권 증진

23. 노인복지기금 관리
24. 장애인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감독
25.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6.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전달체계 강화
27.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심사 업무 추진
28.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29.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30.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31. 여성장애인지원 사업
32.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
33. 장애인일자리 사업
34. 장애인 편의증진
3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36.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보호시설 및 상담소 지원관리
3.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관리
5. 성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7.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운영
8.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관리
9.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10. 청소년보호·육성 종합대책 수립
11. 청소년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12.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13.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4.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15. 어린이집 인가·허가
16.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7.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18. 영유아 보육료 책정 및 지원 결정

19. 어린이집 교직원 관리 등
20. 드림스타트 서비스 계획 및 수립 시행
2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22.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자원 개발
23. 방문조사 서비스 제공 및 통합사례 관리
2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2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26.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시설단체 지원 및 민간행사 지원
27.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28. 외국인주민 및 가족지원 공모사업 및 시책추진
29. 재여외국인 한마당 행사
30. 보육정책 및 보육지원 수립 시행
31.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지원
32. 유치원 운영 지원(교육경비 지원, 정산, 업무 협의 등)
33. 시립어린이집 위·수탁에 관한 사항
34. 시립어린이집 운영평가 계획수립·시행
35.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 전보업무
36.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3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38. 온종일 돌봄 업무 수립·시행
39. 다함께 돌봄사업 센터 업무 계획 수립·시행
40. 중장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29조의 제목 “(기후환경과)” 를 “(기후생태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환경과장” 을 “기후생태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2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을 “자원순환 집행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감량화” 를 “감량화(RFID 사업)” 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름다운 여수가꾸기 청결활동
8. 자원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업무
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1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
17.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
18.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
19.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단속
20. 도서지역 폐기물 간이매립장 운영관리
21.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제32조제3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5호부터 제74호까지를 각각 제34호부터 제7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9호(종전의 제60호) 중 “돌산청사”를 “문수청사”로 한다.

제35조제18호 중 “클럽 구성 운영”을 “발전 포럼 구성 및 운영지원”으로 한다.

제38조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3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5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6호부터 제6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야간경관사업 시행
57. 고효율 가로등 도로조명 교체 계획수립
58. 읍·면·동 고효율 보안등 교체 계획수립
59.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60. 보안등(농어촌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
61. 터널등 설치 및 유지관리
62.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63. 일루미네이션 설치 및 유지관리
64. 돌산대교·거북선대교 조명설치 및 유지관리
65. 연륙교·연도교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

제40조제23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1호부터 제60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52호까지로 한다.

제42조제16호 중 “관리”를 “관리(다만, 교통과 외 부서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로 한다.

제43조제6호 중 “관리(누락)”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개조사업(추가)”을 “주택개조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옥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한옥건축물 조성과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업무

- 33. 행복주택 건설 지원
- 34. 공동주택관리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35. 건축물관리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49조제2항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0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한다.

- 20. 농어촌지역 새뜰마을사업 추진
- 21. 도시재생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시민대학, 소규모 자체사업 등) 추진
- 22. 도시재생지역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지원·관리

제49조제5항제1호 중 “도시녹화계획(국토공원화 포함)” 을 “도시녹화계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및 조림용 양묘사업 관리” 를 “운영”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 오동도 점·사용 허가(점·사용료 부과)
- 27.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제51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11호) 중 “공사” 를 “상하수도 공사” 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제24호로 한다.

9. 하수도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제51조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생활자원사업소” 를 “산단환경관리사업소” 로 한다.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제54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하고,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소장)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3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지역의 범위는 국토 17호 선을 기준으로 울촌면부터 둔덕 삼거리까지 산업단지 방향 내 지역(주삼, 삼일, 묘도 방면)으로 하며 오천일반산업단지, 화양농공단지를 포함한다]

- 1. 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지원 등)
- 2.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3.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검토 및 심의

4. 악취관리지역 종합상황실 운영 및 측정 인프라 구축
5.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6.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TMS 관리·운영
7. 산업단지 환경관련 단체 운영 및 관리
8.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9.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1. 휘발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4. 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5.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16. 산업단지 환경오염사고 방제 및 대응
17. 여수국가산단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
18. 오천지방산단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
19. 화양농공단지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
20. 여수국가산단 안전점검의 날 행사 계획 수립·시행
21. 여수국가산단 안전문화캠페인 계획 수립·시행
22. 여수국가산단 재난대응 훈련 계획 수립·시행
23. 여수국가산단 안전기술세미나 계획 수립·시행
24. 여수국가산단 고압가스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 추진
25.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수립·시행
26.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
27. 폐기물매립시설 사전적립금, 사후관리이행 보증업무
28. 폐기물관련 사업장 법정교육
29. 사업장·건설·지정 폐기물 배출사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폐기물처분업(중간,최종,종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1. 폐기물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2.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건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3. 석면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4. 고형연료제품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제4장제4절의 제목 “차량등록사업소” 를 “생활자원사업소” 로 한다.

제56조 앞에 “제5장 중부민원출장소” 를 삭제한다.

제5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차량등록사업소

제57조(중전의 제55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확인·지도 점검

제58조 앞에 “제6장 읍·면·동”을 삭제한다.

제5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중부민원출장소

제6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읍·면·동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제60조 관련)

읍·면·동	직 위	직 급
돌산읍	돌산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소라면	소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
울촌면	울촌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
화양면	화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
남 면	남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화정면	화정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삼산면	삼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동문동	동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한려동	한려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중앙동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총무동	총무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광림동	광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서강동	서강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대교동	대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국 동	국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월호동	월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
여서동	여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문수동	문수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미평동	미평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둔덕동	둔덕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만덕동	만덕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쌍봉동	쌍봉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시전동	시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여천동	여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주삼동	주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삼일동	삼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묘도동	묘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별표 4]

읍·면·동장 사무(제62조 관련)

구분	분 장 사 무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운영,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 - 선거 및 투표, 주민만남의 날 운영, 적십자회비 모금 등 - 공한지 꽃밭 조성, 도로변 제초 등 ○ 세무, 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변동자료 관리 및 고지서 전달 - 지방세 체납세금 독촉 및 징수, 건축물 실측 현지조사 등 ○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각종 증명발급 등 ○ 재난관리, 민방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이재민 발생보고, 재해(수해)피해조사 - 민방위, 인력동원, 자격면허관리 등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 차상위 계층,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청소년 복지에 대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 자활사업, 의료급여, 보육업무에 대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등 - 영구 임대주택 입주신청 접수 ○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투기·불법소각 방지 지도, 쓰레기 종량제 계도 -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대형 폐기물 처리신청 - 국토 대청결 운동 등 ○ 농정, 축산, 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원부 작성·관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 및 농지전용 신고, 자격증명 발급 - 농어업 재해발생 조사 및 신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 작물재배 및 수확량 조사, 농기계 수량 조사 등 - 가축 사육사실 확인, 사료작물 재배현황조사,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 등 - 산불 예방 및 진화, 임산물 생산량 조사 등 ○ 건설, 도시, 건축, 수도,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 적치물 단속, 양수기 보관관리, 제설작업 -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및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 건축 철거 멸실 사실 확인 및 건축물 일제조사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 배부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복무 상황 확인

구분	분 장 사 무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운영,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 - 선거 및 투표, 주민만남의 날 운영, 적십자회비 모금 등 - 공한지 꽃밭 조성 등 ○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인감, 각종 증명발급 등 ○ 재난관리, 민방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이재민 발생보고 - 민방위, 인력동원, 자격면허 관리 등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 차상위 계층,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청소년 복지에 대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 자활사업, 의료급여, 보육업무에 대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등 - 영구 임대주택 입주신청 접수 ○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폐기물 처리신청, 국토 대청결 운동 등 ○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원부 작성·관리 ○ 건설, 도시, 수도,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및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 배부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복무 상황 확인

현행	개정안
<p><u>물 설치 관리</u></p> <p>33. ~ 44. (생략)</p> <p><u>45. 미래대응전략 수립 및 총괄</u></p> <p><u>46. 미래전략과제 발굴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u></p> <p><u>47. 미래대응 관련 행사 추진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u></p> <p><u>48.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 및 지원</u></p> <p><u>49.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u></p> <p><u>50.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전파</u></p> <p><u>51.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지원</u></p> <p>제16조(<u>산단지원과</u>) <u>산단지원과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2. (생략)</p> <p><u>3. 산단 인·허가 등 민원 원스톱 처리 지원</u></p> <p><신설></p> <p>4. ~ 6. (생략)</p> <p><u>7. 노동쟁의행위 지도</u></p> <p>8. ~ 10. (생략)</p>	<p><u>회·시장관리자 등록·취소</u></p> <p>33. ~ 4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16조(<u>산업지원과</u>) <u>산업지원과장</u>-----.</p> <p>1.·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u>6. 노동쟁의행위 동향관리</u></p> <p>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삭제></p> <p>7. ~ 9.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u>11. 비정규직 노동센터 설립 및 운영</u> <u><신 설></u> <u>12. · 13. (생략)</u> <u><신 설></u> <u><신 설></u></p>	<p><u>10. ----- 운영</u> <u>13. 미래대응전략 수립 및 총괄</u> <u>11. · 12.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u> <u>14. 미래전략과제 발굴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u> <u>15. 미래대응 관련 행사 추진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u> <u>16.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 및 지원</u> <u>17.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u> <u>18.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 · 전파</u> <u>19.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 지원</u> <u>20. 중앙 부처별 R&D사업 추진</u> <u>21. R&D전략 및 계획수립 등 연구개발 종합기획 조정</u> <u>2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u> <u>23. 지역특화사업 사무에 관한 사항</u> <u>24.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u></p>

현행	개정안
<u><신 설></u>	<u>25. 산·학·연 기술 공동개발 관리 지원</u>
<u><신 설></u>	<u>26. 생물산업 및 기술혁신산업 지원 운영</u>
<u><신 설></u>	<u>27. 지식기반 및 신소재산업 육성 지원</u>
<u><신 설></u>	<u>28.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실증기반 조성사업</u>
<u><신 설></u>	<u>29. 여수과학관 건립 사업</u>
<u><신 설></u>	<u>30. 고감성 고분자소재 산업화 사업 추진</u>
<u><신 설></u>	<u>31.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지원</u>
<u><신 설></u>	<u>32.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CO2 전환·활용 기술센터)</u>
<u><신 설></u>	<u>33. 산단 인·허가 등 민원 원스톱 처리 지원</u>
<p>제17조(투자박람회과) 투자박람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12. (생략)</p> <p><u>13. 중앙 부처별 R&D사업 추진</u></p> <p><u>14. R&D전략 및 계획수립 등 연구개발 종합기획 조정</u></p> <p><u>15.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u></p>	<p>제17조(투자박람회과)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16. <u>지역특화사업 사무에 관한 사항</u>	<삭 제>
17. <u>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u>	<삭 제>
18. <u>산·학·연 기술 공동개발 관리 지원</u>	<삭 제>
19. <u>생물산업 및 기술혁신산업 지원 운영</u>	<삭 제>
20. <u>지식기반 및 신소재산업 육성 지원</u>	<삭 제>
21. ~ 32. (생 략)	13. ~ 24. (현행 제21호부터 제 32호까지와 같음)
제24조(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24조(시립도서관)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u>이순신도서관 운영 및 관리 업무</u>
<신 설>	16. <u>도서관 건립 및 확충계획</u>
<신 설>	17. <u>도서관 기계·소방시설 관리</u>
제25조(환경복지국) 환경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	제25조(환경복지국) ----- ----- ----- ----- ----- -----

현행	개정안
<p>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u>기후환경과장</u>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시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p>	<p>----- ----- <u>기후</u> <u>생태과장</u>----- ----- ----- ----- ----- -----.</p>
<p>제26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사회복지서비스</u> 종합계획 수립·조정 3. <u>사회복지서비스</u>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4. ~ 18. (생략) 19. <u>지역사회복지협의체</u> 운영 20. ~ 22. (생략) 23. <u>자활후견기관</u> 관리 24. ~ 26. (생략) 27. <u>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u> 28. ~ 37. (생략) 38. (생략) 	<p>제26조(사회복지과)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지역사회보장</u> ----- ----- 3. <u>지역사회보장</u> ----- ----- 4. ~ 18. (현행과 같음) 19.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 --- 20. ~ 22. (현행과 같음) 23. <u>지역자활센터</u> -- 24. ~ 26. (현행과 같음) <삭제> 27. ~ 36. (현행 제28호부터 제37호까지와 같음) 37. (현행 제38호와 같음)
<p>제27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p>	<p>제27조(노인장애인과) -----</p>

현행	개정안
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기초노령연금</u> 업무	2. <u>기초연금</u> -----
3. ~ 14. (생략)	3. ~ 14. (현행과 같음)
<u><신설></u>	15. <u>노인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u><신설></u>	16. <u>노인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 감독</u>
<u><신설></u>	17. <u>노인단체 지원관리</u>
<u><신설></u>	18. <u>홀로사는 노인 안전시스템 구축</u>
<u><신설></u>	19. <u>어르신 공동생활보금자리 운영</u>
<u><신설></u>	20. <u>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운영</u>
<u><신설></u>	21. <u>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운영</u>
<u><신설></u>	22. <u>노인 사회적 보호 체계 및 인권 증진</u>
<u><신설></u>	23. <u>노인복지기금 관리</u>
<u><신설></u>	24. <u>장애인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 감독</u>
<u><신설></u>	25. <u>장애인 생활안정 지원</u>
<u><신설></u>	26. <u>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전달 체계 강화</u>
<u><신설></u>	27. <u>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심</u>

현행	개정안
<p><신 설> <신 설></p> <p>제28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8. (생략)</p> <p>9. <u>건강가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u></p> <p>10. <u>건강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u></p> <p>11. (생략)</p> <p>12. <u>아이돌보미 지원사업</u></p> <p>13. <u>미혼모부자 거점사업</u></p> <p><신 설></p> <p>14. ~ 24. (생략)</p>	<p><u>사업추진</u></p> <p>28. <u>장애인 재활지원 사업</u></p> <p>29. <u>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u></p> <p>30. <u>발달장애인지원 사업</u></p> <p>31. <u>여성장애인지원 사업</u></p> <p>32. <u>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u></p> <p>33. <u>장애인일자리 사업</u></p> <p>34. <u>장애인 편의증진</u></p> <p>35. <u>장애인활동지원 사업</u></p> <p>36. <u>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u></p> <p>제28조(여성가족과) ----- -----.</p> <p>1. ~ 8.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9. (현행 제11호와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24. <u>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u></p> <p>10. ~ 20. (현행 제14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u>25. 아동건강검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u>26. ~ 28. (생략)</u></p> <p><u>29. 다문화가족 지원</u></p> <p><u>3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시행</u></p> <p><u>31.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u></p> <p><u>32.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시행</u></p> <p><신설></p> <p><신설></p> <p><u>33. · 34. (생략)</u></p> <p><u>35. 보육지원시설(육아종합지원</u></p>	<p><u>2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u></p> <p><u>26.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시설단체 지원 및 민간행사 지원</u></p> <p><u>27.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u></p> <p><u>28. 외국인주민 및 가족지원 공모사업 및 시책추진</u></p> <p><u>21. ~ 23. (현행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u></p> <p><삭제></p> <p><삭제></p> <p><u>31.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지원</u></p> <p><삭제></p> <p><u>33. 시립어린이집 위·수탁에 관한 사항</u></p> <p><u>34. 시립어린이집 운영평가 계획수립·시행</u></p> <p><u>29. · 30. (현행 제33호 및 제34호와 같음)</u></p> <p><u>35.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평</u></p>

현행	개정안
<p><u>센터 등) 관리 지원</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36. (생략)</p> <p><신 설></p> <p>제29조(기후환경과) <u>기후환경과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20. (생략)</p> <p>21. <u>유독물 사업장(취급·판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22. ~ 29. (생략)</p> <p>30. (생략)</p> <p>제30조(도시미화과) <u>도시미화과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u></p> <p>2. (생략)</p> <p>3. <u>국토대청결 운동</u></p> <p>4. ~ 7. (생략)</p>	<p><u>가 전보업무</u></p> <p>36. <u>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u></p> <p>37. <u>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u></p> <p>38. <u>온종일 돌봄 업무 수립·시행</u></p> <p>39. <u>다함께 돌봄사업 센터 업무 계획 수립·시행</u></p> <p>32. (현행 제36호와 같음)</p> <p>40. <u>중장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u></p> <p>제29조(기후생태과) <u>기후생태과장</u> -----.</p> <p>1. ~ 20.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21. ~ 28. (현행 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와 같음)</p> <p>29. (현행 제30호와 같음)</p> <p>제30조(도시미화과) -----</p> <p>-----.</p> <p>1. <u>자원순환 집행계획</u> ----</p> <p>2. (현행과 같음)</p> <p>3. <u>아름다운 여수가꾸기 청결활동</u></p> <p>4. ~ 7.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8. <u>자원재활용품 중간수집상 설치운영 및 관리</u>	8. <u>자원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업무</u>
9. <u>소규모 쓰레기 소각 및 매립 시설 설치운영</u>	9. <u>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u>
10. <u>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u>	10. ----- <u>감량화(RFID 사업)</u>
11. <u>소각장 시설관리 운영</u>	11. <u>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u>
12. ~ 15. (생략)	12. ~ 15. (현행과 같음)
<신설>	16. <u>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u>
<신설>	17. <u>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u>
<신설>	18. <u>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u>
<신설>	19. <u>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단속</u>
<신설>	20. <u>도서지역 폐기물 간이매립장 운영관리</u>
<신설>	21. <u>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u>
제32조(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32조(수산경영과) ----- -----.
1. ~ 33. (생략)	1. ~ 33. (현행과 같음)
34. <u>어선·어구 자연재해 복구</u>	<삭제>

현행	개정안
<p><u>사업</u></p> <p><u>35. ~ 59.</u> (생략)</p> <p><u>60. 돌산청사</u> 유기민원 접수 및 지방세 신고 납부 처리</p> <p><u>61. ~ 73.</u> (생략)</p> <p><u>74.</u> (생략)</p> <p>제35조(섬자원개발과) 섬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17. (생략)</p> <p>18. 아름다운 섬 클럽 구성 운영</p> <p>19. ~ 21. (생략)</p> <p>제38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21. (생략)</p> <p><u>22. 그 밖의 행복마을 관련 사업 추진</u></p> <p><u><신설></u></p> <p><u>23. ~ 56.</u>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34. ~ 58.</u> (현행 제35호부터 제59호까지와 같음)</p> <p><u>59. 문수청사</u> -----</p> <p>-----</p> <p><u>60. ~ 72.</u> (현행 제61호부터 제73호까지와 같음)</p> <p><u>73.</u> (현행 제74호와 같음)</p> <p>제35조(섬자원개발과) -----</p> <p>-----.</p> <p>1. ~ 17. (현행과 같음)</p> <p>18. ----- <u>발전 포럼 구성 및 운영지원</u></p> <p>19. ~ 21. (현행과 같음)</p> <p>제38조(도시계획과) -----</p> <p>-----.</p> <p>1. ~ 21.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56. 야간경관사업 시행</u></p> <p><u>22. ~ 55.</u> (현행 제23호부터 제56호까지와 같음)</p> <p><u>57. 고효율 가로등 도로조명 교체 계획수립</u></p> <p><u>58. 읍·면·동 고효율 보안등 교체 계획수립</u></p> <p><u>59.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u></p>

현행	개정안
<u><신 설></u>	60. <u>보안등(농어촌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u>
<u><신 설></u>	61. <u>터널등 설치 및 유지관리</u>
<u><신 설></u>	62. <u>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u>
<u><신 설></u>	63. <u>일루미네이션 설치 및 유지관리</u>
<u><신 설></u>	64. <u>돌산대교·거북선대교 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u>
<u><신 설></u>	65. <u>연륙교·연도교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u>
<p>제40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22. (생략)</p> <p>23. <u>여수국가산단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u></p> <p>24. <u>오천지방산단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u></p> <p>25. <u>화양농공단지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u></p> <p>26. <u>여수국가산단 안전점검의 날 행사 계획 수립·시행</u></p> <p>27. <u>여수국가산단 안전문화캠페</u></p>	<p>제40조(재난안전과) ----- -----.</p> <p>1. ~ 2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인 계획 수립·시행</u></p> <p>28. <u>여수국가산단 재난대응 훈련 계획 수립·시행</u></p> <p>29. <u>여수국가산단 안전기술세미나 계획 수립·시행</u></p> <p>30. <u>여수국가산단 고압가스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 추진</u></p> <p>31. ~ 60. (생략)</p> <p>제42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5. (생략)</p> <p>16. <u>공영 주차장 운영 및 관리</u></p> <p>17. ~ 47. (생략)</p> <p>제43조(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5. (생략)</p> <p>6. <u>주거급여(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수급자 보장결정 및 관리(누락)</u></p> <p>7. <u>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추가)</u></p> <p>8. ~ 30. (생략)</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23. ~ 52. (현행 제31호부터 제60호까지와 같음)</p> <p>제42조(교통과) ----- -----.</p> <p>1. ~ 15. (현행과 같음)</p> <p>16. ----- <u>관리(다만, 교통과 외 부서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u></p> <p>17. ~ 47. (현행과 같음)</p> <p>제43조(허가민원과)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관리</u></p> <p>7. ----- <u>주택개조사업</u></p> <p>8. ~ 30.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u><신 설></u>	31. <u>한옥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한옥건축물 조성</u> 과 이에 따른
<u><신 설></u>	<u>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32. <u>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u>
<u><신 설></u>	<u>관한 특례법</u> 관련업무
<u><신 설></u>	33. <u>행복주택 건설 지원</u>
<u><신 설></u>	34. <u>공동주택관리법</u> 업무 전반
<u><신 설></u>	<u>에 관한 사항</u>
<u><신 설></u>	35. <u>건축물관리법</u> 업무 전반에
제49조(하부조직) ① (생략)	제49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무를	② -----
분장한다.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u>20. 야간경관사업 시행</u>	<u>20. 농어촌지역 새뜰마을사업</u>
	<u>추진</u>
<u>21. 고효율 가로등 도로조명 교</u>	<u>21. 도시재생지역 주민역량강화</u>
<u>체 계획수립</u>	<u>사업(시민대학, 소규모 자체사</u>
<u>22. 읍·면·동 고효율 보안등</u>	<u>업 등) 추진</u>
<u>교체 계획수립</u>	<u>22. 도시재생지역 마을기업 및</u>
<u>23.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u>	<u>협동조합 설립지원·관리</u>
<u>24. 보안등(농어촌 보안등)설치</u>	<삭 제>
<u>및 유지관리</u>	<삭 제>
<u>25. 공원등·터널등 설치 및 유</u>	<삭 제>

현행	개정안
<p><u>지관리</u></p> <p>26.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 <u>관리</u></p> <p>27. 일루미네이션 설치 및 유지 <u>관리</u></p> <p>28. 돌산대교·거북선대교 조명 <u>설치 및 유지관리</u></p> <p>29. 연륙교·연도교 경관조명에 <u>관한 사항</u></p> <p>30. ~ 39. (생략)</p> <p>③·④ (생략)</p> <p>⑤ 공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 장한다.</p> <p>1. <u>도시녹화계획(국토공원화 포 합) 수립</u></p> <p>2. (생략)</p> <p>3. 도시녹화 양묘장 및 조림용 <u>양묘사업 관리</u></p> <p>4. ~ 24. (생략)</p> <p><u><신설></u></p> <p>25. (생략)</p> <p><u><신설></u></p> <p>제51조(하부조직) ① (생략)</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23. ~ 32. (현행 제30호부터 제 39호까지와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p>1. <u>도시녹화계획</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운영</u></p> <p>4. ~ 24. (현행과 같음)</p> <p>25. <u>오동도 점·사용 허가(점· 사용료 부과)</u></p> <p>26. (현행 제25호와 같음)</p> <p>27. <u>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u></p> <p>제51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 음)</p>

현행	개정안
<p>② 수도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6. (생략)</p> <p>7. <u>상하수도사업소 당직운영(하수도과 제외) 및 공무원 비상연락체계 유지</u></p> <p>8. <u>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 제외)내 우편물 접수·배분</u> <신설></p> <p>9.·10. (생략)</p> <p>11. <u>공사 관급자재 계약관리</u></p> <p>12. ~ 24. (생략)</p> <p>25. (생략)</p> <p>③ (생략)</p> <p>④ 하수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5. (생략)</p> <p>6. <u>공사계약에 관한 사항</u></p> <p>7. ~ 12. (생략)</p> <p>13. (생략)</p> <p>제3절 <u>생활자원사업소</u> <신설></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9. <u>하수도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u></p> <p>7.·8.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p> <p>10. <u>상하수도 공사</u> -----</p> <p>11. ~ 23. (현행 제12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p> <p>24. (현행 제25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제></p> <p>6. ~ 11. (현행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p> <p>12. (현행 제13호와 같음)</p> <p>제3절 <u>산단환경관리사업소</u> <u>제52조(소장) 산단환경관리사업소</u></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u></p> <p><u>제53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지역의 범위는 국도 17호선을 기준으로 울춘면부터 둔덕 삼거리까지 산업단지 방향 내 지역(주삼, 삼일, 묘도 방면)으로 하며 오천일 반산업단지, 화양농공단지를 포함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지원 등)</u> <u>2.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u> <u>3.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검토 및 심의</u> <u>4. 악취관리지역 종합상황실 운영 및 측정 인프라 구축</u> <u>5.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u> <u>6.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TMS 관리·운영</u> <u>7. 산업단지 환경관련 단체 운영 및 관리</u> <u>8.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지도·</u>

현행	개정안
	<p><u>점검 및 행정처분</u></p> <p>9. <u>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10. <u>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11. <u>휘발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12. <u>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13. <u>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14. <u>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15. <u>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u></p> <p>16. <u>산업단지 환경오염사고 방제 및 대응</u></p> <p>17. <u>여수국가산단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u></p> <p>18. <u>오천지방산단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u></p> <p>19. <u>화양농공단지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u></p>

현 행	개 정 안
	<p>20. <u>여수국가산단 안전점검의 날 행사 계획 수립·시행</u></p> <p>21. <u>여수국가산단 안전문화캠페인 계획 수립·시행</u></p> <p>22. <u>여수국가산단 재난대응 훈련 계획 수립·시행</u></p> <p>23. <u>여수국가산단 안전기술세미나 계획 수립·시행</u></p> <p>24. <u>여수국가산단 고압가스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 추진</u></p> <p>25. <u>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수립·시행</u></p> <p>26. <u>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u></p> <p>27. <u>폐기물매립시설 사전적립금, 사후관리이행 보증업무</u></p> <p>28. <u>폐기물관련 사업장 법정교육</u></p> <p>29. <u>사업장·건설·지정 폐기물 배출사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30. <u>폐기물처분업(중간,최종,종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31. <u>폐기물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32. <u>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건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 생활자원사업소</u></p> <p><u>제52조</u> · <u>제53조</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중부민원출장소</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제54조</u> (생략)</p> <p><u>제55조</u>(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20.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읍·면·동</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제56조</u> · <u>제57조</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제58조</u> ~ <u>제60조</u> (생략)</p>	<p><u>33. 석면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u>34. 고형연료제품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 생활자원사업소</u></p> <p><u>제54조</u> · <u>제55조</u> (현행 제52조 및 제53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절 차량등록사업소</u></p> <p><u>제56조</u> (현행 제54조와 같음)</p> <p><u>제57조</u>(분장사무) ----- -----.</p> <p>1. ~ 20. (현행과 같음)</p> <p><u>21.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확인·지도 점검</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중부민원출장소</u></p> <p><u>제58조</u> · <u>제59조</u> (현행 제56조 및 제57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읍·면·동</u></p> <p><u>제60조</u> ~ <u>제62조</u> (현행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와 같음)</p>

제18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 월 2 일

여 수 시 장

권 2 봉 인



여수시 규칙 제731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731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 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중 “보좌·보조기관”을 “보좌기관·보조기관”으로 하고, “정원배정”을 “정원 배정”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직급별 정원)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u></p>	<p><u>제2조(직급별 · 직렬별 정원)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 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u></p>
<p><u>제3조(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 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u></p>	<p><u><삭 제></u></p>
<p><u>제4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 ·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제3조(정원의 배정) -----</u> <u>-- 보좌기관 · 보조기관-----</u> <u>-- 정원 배정-----</u> <u>----</u></p>

[별표 1] <개정 2020. 1. 2.>

여수시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표(제2조관련)

기관별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785	873	29	216	214	15	30	126	282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계	1,743	866	29	184	214	15	30	123	282
3급	1	1							
4급	11	6	1	2	2				
5급	84	35	3	8	10	1	1	6	20
6급	379	195	7	44	40	3	7	37	46
7급	459	257	5	46	59	4	6	21	61
8급	448	216	7	60	56	3	6	22	78
9급	358	153	6	24	47	4	10	37	77
전문경력관(나군)계	3	3							
통역원	1	1							
화생방관리원	1	1							
직업훈련교사	1	1							
별정직계	1	1							
비서요원(6급상당)	1	1							
연구직계	7	5		2					
기록연구사	2	2							
농업연구사	2			2					
학예연구사	3	3							
지도직계	33			30				3	
농촌지도사	33			30				3	

[별표 2] <개정 2020. 1. 2.>

여수시지방공무원직렬별정원표(제2조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		()		()
총 계	1,785	873	29	216	214	15	30	(1)	126	(1)	282	(5)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계	1,743	866	29	184	214	15	30		123		282	
3급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계	11	6	1	2	2							
행정	4	3	1									
기술	2	1		1								
행정+기술	4	2			2							
행정+기술+농촌지도	1			1								
5급계	84	35	3	8	10	1	1		6		20	
행정	18	15	2		1							
해양수산	1	1										
시설	4	3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지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6	3	1		2							
행정+방송통신	1	1										
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7	1				1					5	
행정+공업+환경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농촌지도	1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5								5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농촌지도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	1							1		
행정+녹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행정+보건+간호+시설									1	
행정+보건+환경+방송통신									1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6급계	379	195	7	44	40	3	7	37	46	
행정	112	67	5		9	1	1	8	21	
세무	8	8								
사회복지	7	5							2	
사서	1	1								
공업	5	2			3					
농업	3			3						
녹지	3	3								
해양수산	8	8								
보건진료	14			14						
환경	3	3								
시설	29	19			8	2				
방송통신	1	1								
운전	4	4								
기계운영	1				1					
행정+세무	9	5			1			3		

행정+전산	6	4					1	1	
행정+사회복지	32	8	1					4	19
행정+사서	5	5							
행정+공업	5	2			2			1	
행정+농업	4			3			1		
행정+녹지	4	1			3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환경	8	4			4				
행정+시설	25	19	1		1			4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4	4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4	2			2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2			2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3			3					
보건+간호	2			2					
행정+세무+전산	2						1	1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3	2			1				
행정+공업+방송통신	2	2							
행정+농업+해양수산	3						1	2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행정+녹지+해양수산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녹지+시설	2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4	3						1	
행정+보건+식품위생	2			2					
행정+보건+간호	3			1				1	1
행정+환경+시설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환경+시설	2				2				
농업+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7			7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5						1	3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서+공업+환경	1	1								
행정+농업+녹지+농촌지도	1							1		
행정+농업+해양수산+농촌지도	1							1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보건+환경+시설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2			2						
7급계	459	257	5	46	59	4	6 (1)	21 (1)		61
행정	134	79	3		13	1	3 (1)	6 (1)		29
세무	18	18								
전산	6	6								
사회복지	36	13						4		19
사서	7	7								
공업	24	12			12					
농업	8	1		4				3		
녹지	8	6			2					
수의	2			2						
해양수산	18	14					1	3		
보건	6			6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6			6						
간호	3			3						
보건진료	5			5						
환경	8	6			2					
시설	55	37			14	3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간호조무	1			1						
시설관리	4	1			3					
운전	16	6	1	4	5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11	6			1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0	5							5	
행정+사서	6	6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6			3						3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1								2
행정+시설	10	10								
전산+방송통신	3	3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6	2			4					
공업+시설	1				1					
공업+방송통신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5			5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3	1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공업+환경+시설	1	1								
보건+식품위생+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5	1		1						3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8급 계	448	216	7	60	56	3	6	22		78 (5)
행정	135	70	3	1	11	1	2	5		42 (5)
세무	11	11								
전산	7	5	1		1					
사회복지	38	11					1	6		20
사서	6	6								
공업	22	14			8					
농업	8			7			1			

녹지	4	3			1				
해양수산	13	11						2	
보건	12	3		9					
의료기술	12			12					
간호	11			11					
보건진료	9			9					
환경	8	7			1				
시설	52	34		1	11	2		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2	1						
위생	2	1		1					
시설관리	4	3			1				
운전	15	6	1	3	5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8	1			7				
사무운영	3	2	1						
행정+세무	9	2			5			2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8	1						1	6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간호	1	1							
행정+시설	6	4			1				1
전산+공업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				1				
공업+방송통신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3			3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7								7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9급계	358	153	6	24	47	4	10	37	77
행정	90	48	3		6	3	3	3	24
세무	15	14						1	
전산	1	1							
사회복지	65	13					2	10	40
사서	3	3							
공업	15	7			8				
농업	3			2			1		
녹지	3	2			1				
해양수산	14	9						5	
보건	11			11					
식품위생	1			1					
환경	2	1			1				
시설	24	17			4	1		2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4	4							
위생	4			1			1	2	
시설관리	5	1			3			1	
운전	17	6		2	4		1	3	1
토목운영	2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3	4			9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27	11	3		7			4	2
행정+세무	4	1						3	
행정+사회복지	8	1							7
행정+사서	3	3							
행정+농업	4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시설	1	1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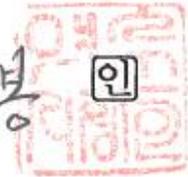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4			1			1		2	
행정+공업+환경	2	1							1	
행정+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환경	1			1						
전문경력관(나군)계	3	3								
통역원	1	1								
화생방관리원	1	1								
직업훈련교사	1	1								
별정직계	1	1								
비서요원(6급상당)	1	1								
연구직계	7	5		2						
기록연구사	2	2								
농업연구사	2			2						
학예연구사	3	3								
지도직계	33			30				3		
농촌지도사	33			30				3		

※ 괄호()안에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제18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20년 / 월 2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인



여수시 규칙 제732호

붙임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732호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2. “기업출납원: 하수도과장” 을 “기업출납원: 수도행정과장, 하수도과장” 로 4. “지출원: 하수시설팀장” 을 “지출원: 수도경리팀장” 로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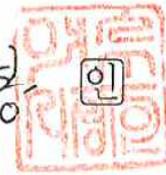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1월 2 일

여수시장

권오봉 인



여수시 훈령 제 390 호

붙임 : 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1부.

여수시 훈령 제370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①항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785	873	29	216	214	15	30	126	282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1,743	866	29	184	214	15	30	123	282	
3 급	1	1								
4 급	11	6	1	2	2					
5 급	84	35	3	8	10	1	1	6	20	
6 급	379	195	7	44	40	3	7	37	46	
7 급	459	257	5	46	59	4	6	21	61	
8 급	448	216	7	60	56	3	6	22	78	
9 급	358	153	6	24	47	4	10	37	77	
전문경력관(나군)계	3	3								
통 역 원	1	1								
화 생 방 관 리 원	1	1								
직 업 훈 련 교 사	1	1								
별 정 직 계	1	1								
비 서 요 원 (6 급 상 당)	1	1								
연 구 직 계	7	5		2						
기 록 연 구 사	2	2								
농 업 연 구 사	2			2						
학 예 연 구 사	3	3								
지 도 직 계	33			30				3		
농 촌 지 도 사	33			30				3		

[별표 2-1]

여수시지방공무원직급·직렬별정원표【본청】(제2조②항관련)

기관별		합계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환경복지국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직급	직렬별		시민10인장50인관	공무10인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체육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지적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투자박람회과	인구임자리과	정보통신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시립도서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평과	여성가족과	기후생태과	도시미화과	수산경용과	어업생산과	해양환경관리과	생자원개발과	산업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교통과	허가민원과			
총 계		873		16	14	43	45	25	37	25	36	30	16	16	17	17	26	24	33	20	42	41	22	28	19	18	27	28	15	18	17	22	17	19	15	34	33			
정무직 계		1				1																																		
정무	소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계		866	17	16	14	40	45	25	37	25	36	30	16	16	17	17	26	24	30	20	42	41	22	28	19	18	27	28	15	18	17	22	17	19	15	34	33			
3급	소 계	1				1																																		
	행 정	1				1																																		
4급	소 계	6				1					1						1				1					1					1									
	행 정	3				1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2																				1					1													
5급	소 계	3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1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해양수산	1																									1													
	시 설	3																															1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서	1																																						
	행정+녹지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3																																						

[별표 2-2]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의회】 (제2조③항 관련)

기 관 별		합 계	의회사무국
직급별	직렬 별		
총 계		29	29
일 반 직 계		29	29
4 급	소 계	1	1
	행 정	1	1
5 급	소 계	3	3
	행 정	2	2
	행 정 + 시 설	1	1
6 급	소 계	7	7
	행 정	5	5
	행 정 + 사 회 복 지	1	1
	행 정 + 시 설	1	1
7 급	소 계	5	5
	행 정	3	3
	운 전	1	1
	사 무 운 영	1	1
8 급	소 계	7	7
	행 정	3	3
	전 산	1	1
	방 송 통 신	1	1
	운 전	1	1
	사 무 운 영	1	1
9 급	소 계	6	6
	행 정	3	3
	사 무 운 영	3	3

[별표 2-3]

여수시지방공무원직급·직렬별정원표[직속기관](제2조④항관련)

기 관 별		합계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직급별	직 렬 별		소계	보 건 행정과	식 품 위생과	건 강 증진과	보 건 사업과	소계	농 업 정책과	농 촌 진흥과	미 래 농업과	특 산 품육성과
총 계		216	143	72	23	22	26	73	27	19	15	12
일반직계		184	143	72	23	22	26	41	27	4	2	8
4급	소 계	2	1	1				1	1			
	기술	1	1	1								
	행정+기술+농촌지도	1						1	1			
5급	소 계	8	4	1	1	1	1	4	1	1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4						4	1	1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1				1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1			1						
6급	소 계	44	35	19	5	5	6	9	6			3
	농업	3						3	2			1
	보건진료	14	14	14								
	행정+농업	3						3	1			2
	농업+수의	2						2	2			

	보건+식품위생	3	3		3							
	보건+간호	2	2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2	2		2							
	행정+보건+간호	1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7	7	3		1	3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2	2			2						
7급	소 계	46	33	18	8	5	2	13	10	2		1
	농업	4						4	4			
	수의	2						2	2			
	보건	6	6	2	1	2	1					
	식품위생	1	1		1							
	의료기술	6	6	5		1						
	간호	3	3	1		2						
	보건진료	5	5	5								
	간호조무	1	1	1								
	운전	4	1	1				3	1	2		
	행정+농업	3						3	2			1

	보건+식품위생	5	5		5							
	보건+의료기술	1	1	1								
	보건+간호	2	2	2								
	보건+식품위생+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1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1			
8급	소 계	60	50	26	5	7	12	10	6	1		3
	행정	1						1				1
	농업	7						7	6			1
	보건	9	9	3	3	2	1					
	의료기술	12	12	8		1	3					
	간호	11	11	2		3	6					
	보건진료	9	9	9								
	시설	1	1	1								
	위생	1	1				1					
	운전	3	2	2				1		1		
	보건+식품위생	1	1		1							
	보건+간호	3	3	1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1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1
	9급	소 계	24	20	7	4	4	5	4	3		1
농업		2						2	1		1	

	보건	11	11	6	1	2	2					
	식품위생	1	1		1							
	위생	1	1		1							
	운전	2	2	1			1					
	행정+농업	2						2	2			
	행정+식품위생	1	1		1							
	보건+의료기술	2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1					
	보건+의료기술+환경	1	1			1						
	연구직 계	2						2			1	1
연구사	소 계	2						2			1	1
	농업연구사	2						2			1	1
	지도직 계	30						30		15	12	3
지도사	소 계	30						30		15	12	3
	농촌지도사	30						30		15	12	3

[별표2-4] 여수시지방공무원직급·직렬별정원표 【사업소】 (제2조⑤항관련)

기 관 별		합계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산단 환경관리사업소	생활 자원사업소	차량 등록사업소
직급별	직 렬 별		소계	도시 재생과	공영 개발과	도로 시설관리과	공원과	소계	수도 행정과	상수 도과	하수 도과			
총 계		214	72	18	15	17	22	93	22	52	19	15	16	18
일반직계		214	72	18	15	17	22	93	22	52	19	15	16	18
4급	소 계	2	1	1				1	1					
	행정+기술	2	1	1				1	1					
5급	소 계	10	4	1	1	1	1	3	1	1	1	1	1	1
	행정	1						1	1					
	시설	1	1			1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2	2	1	1									
	환경+시설	2						1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1				
6급	소 계	40	16	5	4	3	4	15	3	8	4	4	3	2

행정	9	5	2	2	1		4	3		1			
공업	3						3		3				
시설	8	4	1	2	1		4		2	2			
기계운영	1						1		1				
행정+세무	1												1
행정+공업	2	1	1										1
행정+녹지	3	3				3							
행정+환경	4										2	2	
행정+시설	1	1	1										
공업+시설	2	1			1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1						1		1				
행정+녹지+시설	1	1				1							
공업+환경+시설	2						1			1		1	
7급 소 계	59	20	4	5	5	6	24	6	12	6	5	5	5
행정	13	6	2	2	1	1	4	3		1		1	2
공업	12	1				1	7		7		2		2
녹지	2	2				2							
환경	2										1	1	

	시설	14	8	2	3	2	1	6		2	4			
	시설관리	3						3	3					
	운전	5	2			1	1					3		
	기계운영	1						1		1				
	행정+세무	1											1	
	공업+환경	4						2		1	1	2		
	공업+시설	1						1		1				
	행정+공업+시설	1	1			1								
8급	소 계	56	20	4	3	5	8	26	6	14	6	2	2	6
	행정	11	4		1	2	1	3	3					4
	전산	1						1	1					
	공업	8	1				1	4		3	1	1	2	
	녹지	1	1				1							
	환경	1										1		
	시설	11	7	2	2	2	1	4		2	2			
	시설관리	1						1	1					
	운전	5	3	1			2	2		1	1			
	전기운영	2	1				1	1			1			
	기계운영	7						7		7				
	행정+세무	5						3	1	1	1			2
	행정+시설	1	1	1										

	공업+시설	1	1				1								
	행정+공업+시설	1	1			1									
9급	소 계	47	11	3	2	3	3	24	5	17	2	3	5	4	
9급	행정	6	2	1		1		2	1		1			2	
	공업	8						6		6		1	1		
	녹지	1	1				1								
	환경	1										1			
	시설	4	2	1		1		1		1			1		
	시설관리	3						3	3						
	운전	4	2			1	1							2	
	토목운영	1						1		1					
	전기운영	1						1		1					
	기계운영	9	1				1	7		7				1	
	화공운영	1						1		1					
	사무운영	7	3	1	2			2	1			1			2
		공업+환경	1										1		

[별표 2-5]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출장소】 (제2조 ⑥항 관련)

기 관 별		합계	중부민원출장소
직급별	직렬별		
총 계		15	15
일 반 직 계		15	15
5 급	소 계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6 급	소 계	3	3
	행정	1	1
	시설	2	2
7 급	소 계	4	4
	행정	1	1
	시설	3	3
8 급	소 계	3	3
	행정	1	1
	시설	2	2
9 급	소 계	4	4
	행정	3	3
	시설	1	1

[별표2-6] 여수시지방공무원직급·직렬별정원표 【읍면동】 (제2조⑦항관련)

기 관 별		합계	읍								면																							
직급별	직 렬 별		농산 면	소 계	소 라 면	예 천 면	화 양 면	고 면	화 정 면	삼 산 면	소 계	내 대 면	안 면	중 양 면	중 구 면	광 림 면	서 강 면	대 곡 면	야 면	야 외 면	여 서 면	문 수 면	미 양 면	미 곡 면	만 곡 면	쌍 암 면	시 진 면	여 천 면	주 삼 면	삼 일 면	묘 내 면			
총 계		438 (7)	30 (1)	126	26 (1)	19	20	20	21	20	282 (5)	11	11	14 (1)	11	13 (1)	10	12	15 (1)	12	19	19	16	12	13	20 (1)	20 (1)	20	12	12	10			
일반직계		435 (7)	30 (1)	123	25 (1)	18	19	20	21	20	282 (5)	11	11	14 (1)	11	13 (1)	10	12	15 (1)	12	19	19	16	12	13	20 (1)	20 (1)	20	12	12	10			
5급	소 계	27	1	6	1	1	1	1	1	1	2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1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1	1		1	1																	
	행정+환경+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농촌지 도	1		1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5									5	1							1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2	1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1									
	행정+농업+녹지+농촌지도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	1		1			1																											
	행정+녹지+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보건+간호+시설	1									1				1																			
행정+보건+환경+방송통신	1									1																							1	
6급	소 계	90	7	37	6	5	5	8	7	6	46	2	2	2	2	2	2	3	2	3	3	3	2	2	3	2	3	2	2	2	2			
	행정	30	1	8	1		1	1	1	2	2	2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사회복지	2									2										1							1						

